

운 영 규 정

2026년

봄햇살 재가복지센터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과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명 칭	봄햇살 재가복지센터
소 재 지	경기 부천시 원미로 143번길 38-1 203호
연 락 처	유선전화)032-225-1198, FAX)032-228-1198
이 메 일	jaegabg@naver.com

제2조(사업내용) 사업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준수의무) 이 규정은 봄햇살 재가복지센터(이하 “기관”라 한다)의 직원과 수급자에게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4조(센터의 비전)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신뢰와 전문성이 결합한 최고의 장기요양기관을 지향한다.

제5조(운영목적)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서 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서비스 수급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안정적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현이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0조(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의 사망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 요구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11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 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총 부담금 중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각각 6%, 9%를 청구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구 분		부담률	내 용
월 이용 한도	공단부담금	85%~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100% 보험공단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85%, 개인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40%, 60% 경감)
		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붙임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참조

제14조(신원인수인 등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 가.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 다.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2. 신원 인수인(보호자,보증인)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
 -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다. 수급자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라.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을 부담할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 가.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고있는지 참관할 권리.
 - 다.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 및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가.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나.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 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한 경우
7.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8. 기관과 계약당사자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16조(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른다.

【붙임】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화장실이용하기,옷 갈아입기,머리감기 등) 및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활동,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 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026년 방문요양 서비스 추가](단위:원)

분 류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방문요양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금(15%)	2,617	3,798	5,118	6,514	7,596	8,553	9,529	10,512
본인부담금(9%)	1,570	2,278	3,070	3,908	4,557	5,131	5,717	6,307
본인부담금(6%)	1,047	1,519	2,047	2,605	3,038	3,421	3,811	4,204
본인부담금(0%)	0	0	0	0	0	0	0	0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 심야가산-밤10시부터 아침6시 이전 이용 시 가산30%
- 휴일가산-관공서 공휴일,일요일 가산30%
- 유급휴일가산-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50%

[2026년도 방문목욕서비스 추가](단위:원)

분 류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차량미이용
방문목욕(60분이상)	88,990원	80,230원	50,100원
본인부담금(15%)	13,348원	12,035원	7,515원
본인부담금(9%)	8,009원	7,221원	4,509원
본인부담금(6%)	5,339원	4,814원	3,006원
본인부담금(0%)	0	0	0